





- 
**보훈급여금** ..... 03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의료지원** ..... 05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 06  
 수업료,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취업지원** ..... 08  
 가점 부여,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 
**대부지원** ..... 10  
 주택·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 12  
 재해위로금, 휴양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 
**사망시 예우** ..... 15  
 사망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보상금 지급대상은?**

-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사망군경 유족 및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 ①배우자 ②자녀(25세 미만) ③부모 ④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만 승계 지급
  - ※ 재해부상공무원과 재해사망공무원 유족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이 1~2급 재해부상공무원은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간호수당만 지급됩니다.

▶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6년도)**

(단위 : 원)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보상금	2,841,000	2,679,000	2,565,000	
중상이부가수당	2,131,000	1,473,000	898,000	
합계	4,972,000	4,152,000	3,463,000	

	2급	3급	4급	5급
보상금	2,281,000	2,132,000	1,789,000	1,482,000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
보상금	1,352,000	1,245,000	836,000	496,000

부양가족수당 (7급이상)	배우자 100,000 미성년 자녀(1인당) 100,000			
고령수당 (60세 이상)	97,000 (부양가족수당을 받지않는 분)			

- 간호수당 :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
  - (상시 간호수당 3,375천원 / 수시 간호수당 2,250천원)
- 생활조정수당 : 생계곤란시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지급
  - 3인 이하 가족(242~311천원), 4인 이상 가족(300~370천원)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6급 이상)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은?** (단위 : 원)

	배우자	부모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미성년 제대)
재해사망군경 유족	1,497,000	1,471,000	1,736,000
1~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1,298,000	1,277,000	1,508,000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476,000	452,000	688,000

부양가족수당	미성년자녀 1명당 100,000 미성년제대 1명당 200,000
2인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274,000(1인 추가 시 274,000 가산)
고령수당 (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또는 2인 이상 사망수당을 받지 않는 분 배우자 149,000원 / 부모·조부모 97,000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고령수당으로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계곤란시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지급
  - 3인 이하 가족(242~311천원), 4인 이상 가족(300~370천원)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 가능

▶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는데...**

-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
-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안내
  - (발급가능 금융기관) 10개 은행(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에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급)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
  -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

**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

- 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또는 국적 상실, 국적 회복
  - 결혼·출생·재혼·이혼 등 친족관계 발생·소멸된 때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시
  - 주소 변경, 영주권 취득
  -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1~6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국비 진료
  - 7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
  - 배우자 : 60% 진료비 감면
-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향도로 61길 53(☎ 02-2225-1114)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042-939-0114)
  - 인천보훈병원 :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032-363-9800)
  - 중앙보훈병원 서울요양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향도로 61길 53(☎ 02-2225-1123)
  - 부산보훈병원 부산요양병원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051-601-8600)
  - 광주보훈병원 광주요양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4-5600)

▶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

-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은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 ※ 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
  - ※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부분의 60% 감면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의료지원 및 위탁병원>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확인 후,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이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 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 ※ 미연장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원
-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서 재해부상군경(공무원)께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 보철구 수명 등을 고려한 연도별 지급계획에 의해 상이호수에 해당하는 품목 안내·접수
  - 철 크러치, 목발, 지팡이는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장구 센터 방문시 지급

▶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 보훈보상대상자 및 수권 유족**

- 생활수준조사 결과,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 지참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 7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
  - 지급시기 : 4월15일,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보훈청 문의

## ▶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대학 미실시)
  -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등록금(수업료)이 면제됩니다.
  - 일반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면제기간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면제학점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없음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입학학기 제외)만 면제)

-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 학습보조비는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25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6,000원을 2회(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공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 있음(보훈관서 문의)

## ▶ 장학금은 없나요?

-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
- 신청 장소 :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
- 신청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보훈보상대상자 및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35세 미만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 80점 이상
  - ※ 지원 제외 : 정규 첫학기, 해외유학·원격대학원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동등과정 수혜자
  - 특수장학 :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 제출 서류
  - 대학원 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1통, 재학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 특수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1통
-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최고 1,300,000원
  - 특수장학 : 300,000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배우자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 채용시험 시 가산점(10% 또는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 원서접수시 첨부
  -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 합격자 발표 후 제출 (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 취업지원대상 및 가점 비율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10%
  -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5%

▶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취업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으로 신청 가능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운전직·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 보훈특별고용 및 공무원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은 1인 3회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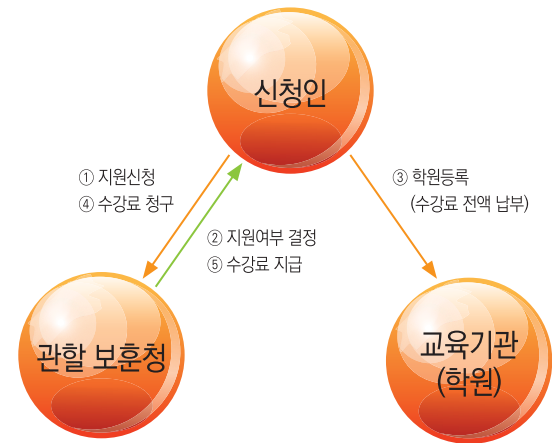
▶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우선선발 모집 정원 및 선발 방법은 개별 모집 공고 확인 필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 ※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주20시간)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
  - ※ 법정취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
  - ※ 지원 횟수 3회 (동일 과정 및 과목 지원 불가)

▶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취업수강료 (지원과정(목) 및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개인정보사전동의서, 서약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세요.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청
  - ※ 타부처(자치단체 포함) 중복지원 불가 (예 : 내일배움카드)
- 학습 진도율 80% 이상(수강기간 2/3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 수강완료 사실확인서, 응시확인서류,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 통장 사본)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 1인당 지원한도액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0,000원(연간 1,500,000원) 유가족 총 1,500,000원(연간 750,000원)
  - ※ 단, 법정취업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 수강료 외 시험응시(수수료), 검정(수수료) 교재비는 미지원
  - ※ 경비신입교육(일반, 특수)과정은 수강료 100% 지원



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 취업수강료 지원,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사이트 주소 : https://job.mpva.go.kr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 신청자격은?

- 보호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 배우자
- 주택구입(신축)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대부 : 무주택인 가구로 수권자 본인 명의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대부 : 대부 신청일 현재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소유 가구
- 사업(창업)대부 : 본인, 배우자 및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대부 : 생활비,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 기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 대부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창구"로 문의

○ 대부종류 및 조건

구분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3,000~6,000만원	연 2.5%	20년균등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시 균인연금, 보호급여금, 연대보증인-직접대부 시)
주택구입(신축)	3,000~6,000만원	연 2.5%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4,500만원	연 2.5%	7년균등	부동산·보호급여금(균인연금)
주택개량	800만원	연 3.5%	7년균등	부동산·보호급여금(균인연금)
농토구입	3,000만원	연 2.5%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 3.5%	7년균등	부동산·보호급여금(균인연금)
생활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시)	300만원 (1,000만원)	연 2%	3년균등	부동산·보호급여금(균인연금)·연대보증인(직접대부 시)

- ※ 보철용 차량 구입 대부는 상이자 본인만 가능
- ※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위탁은행 문의)
- ※ 보호급여금(균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대부(한도300만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도입(24.1.-)
- 국민은행(KB스타뱅킹) 또는 농협은행(NH뱅킹) 앱을 통해 신청

○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세요.(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

▶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을 받고 싶습니다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
  - 보호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 배우자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 신청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보훈관서에 문의)
  -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 주택우선공급신청서(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정보동의서(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추천서약서(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무주택입증서류 :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물물대장(전유부)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동거가족 도장

- ※ 매년 1월 초 접수기간(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
-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에는?

- 배정기준(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
-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
- ※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나라사랑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

- 대부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농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 보훈보상대상자 및 수급 유족

-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
  -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재해발생신고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소방서, 경찰서 또는 시·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지급

## ▶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등록증(보훈보상대상자증) 제시 필요,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등은 변경될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예우보상) 지원안내>기타지원)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

협약콘도(명)	내용	예약문의
보훈휴양원	충주 보훈휴양원 연중 이용 가능	☎ 043-854-2121 또는 <a href="http://condo.bohun.or.kr">http://condo.bohun.or.kr</a>
소노호텔&리조트(前 대명)	15개 지역(때밀리 및 스위트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주말, 연휴, 성수기)예약 제외) *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전화(☎ 1588-4888) 또는 홈페이지 <a href="https://www.sonohotelsresorts.com">https://www.sonohotelsresorts.com</a> * 이용권 번호 객실(폼온리) : 52099159 * 소노리조트(소노캠베빌디/경주, 솔비치남해) 객실(폼온리) 52099324
한화리조트	12개 지역(20평형대 디럭스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잔여객실에 한함) *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	홈페이지 예약 <a href="http://www.hanwharesort.co.kr">www.hanwharesort.co.kr</a> * 고객센터번호 : 11806536
일성리조트	7개 지역(19~40평형대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 * 제주비치는 금·일 주말요금 적용 * 부곡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055-536-9870) * 금, 토,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 별도 요금 적용 *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	전화예약(☎ 1566-8113) 또는 예약사이트 <a href="http://www.ilsungresort.co.kr">www.ilsungresort.co.kr</a> * 법인번호 : 62239063
호반호텔앤리조트	3개 지역 * 연중(주말 연휴 제외 /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 * 아일랜드리조트(안면도), 포레스트리조트(제천), 레스트리조트(제천) 주말, 연휴, 예약불가 * 자세한 이용사항 업체 문의	홈페이지 예약( <a href="http://www.resom.co.kr">www.resom.co.kr</a> ) * 리솜 홈페이지( <a href="http://resom.co.kr">resom.co.kr</a> )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회원정보에서 "MOU" 선택 업체 "국가보훈부" 선택 후 인증번호(1400) 입력 > 회원가입 완료 후 "패키지 예약" 진행
청풍리조트	충북 제천 소재(7.9평형 스탠다드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 *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 성수기,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 요금 별도문의	전화예약(☎ 043-640-7000)
주문진리조트	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10~19평형대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 * 성수기, 연휴기간은 요금 별도 문의	전화예약(☎ 033-661-7400)

\* 예약번호, 고객센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

## ▶ 세금공제 혜택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구분	감면내용	감면방법
연말정산 추가소득공제	연말 소득정산 시 200만원 추가 공제	국가보훈부에서 국제청에 일괄 전송 (국가유공자확인원 제출 불요)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5.12.31.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
상속세, 증여세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락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부양가족공제는 유공자본인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하여야 함.

## ▶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보훈보상대상자증) 등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상이 1~3급은 보호자 1인), 수권 유족(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
  - 100% 감면시설 :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 할인시설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 ▶ 차량구입 사용에 따른 지원은?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만 해당됩니다.

### ▶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보훈등록증(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을 자동차 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50% 감면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 지방세 50% 감면요건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 형제, 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 도시철도 채권 면제요건(비사업용차량)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 형제, 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6인승이하, 7인승이상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소형특수차 중 1대

## ▶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만 해당됩니다.

-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ℓ 까지 세급인상분 지원(세금 인상, 인화에 따른 변동 있음) ※ 50ℓ 추가신청 가능한 경우 : 사업장·직장·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이상인 경우(1일기준)
  - LPG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복지카드사용 즉시 정지
-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충전비 : 월 29,000원 한도 내 (복지카드로 충전시 지원)
  - 구매보조금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 ※ 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시 지원,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상이 1~5급
  - 지원내용 : 상이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신체조건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 차량 개조에 따른 비용을 한도(인당 1,500만원) 내 지원

## ▶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신분증 및 사진(3.5×4.5cm)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30일 정도 소요)
  - 신용카드 기능(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 / 직불카드 기능(신한은행, 우체국계좌 만 가능)

### LPG·전기·수소차량 이용시 주의사항

- 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기능 보원을 위해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
  - ※ 본인만 사용해야 함
  - ※ 유공자 사망, 세대분리, 해외체류, 차량매각,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지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만 해당됩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자동차등록사항 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 발급대상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
    - 상이등급 1~3급은 전원, 상이 4~6급2항 중 상이호수에 따라 적용(자세한 사항은 보훈청 복지과로 문의)

▶ **교통수단도 할인되나요?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만 해당됩니다.**

▶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무료 또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	이용방법	지원내용	감면율
기차	철도역 창구 또는 인터넷 예매 후 현장에서 국가보훈등록증(보훈대상자증) 제시 → 승차권 교부	KTX, SRT 등 전타 중 이용가능 상이 1~2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연간 무임 6회(승차일기준) 50%할인(무제한, 특실제외)	무임6회 50%할인(무제한)
지하철	무인 발권기에 국가보훈등록증(보훈대상자증) 접촉시켜 1회용 우대권 발급(보증급 필요)	상이 1급은 보호자1인 포함	무임

- ※ 부정 사용 확인 시 관련 규정(여객운송약관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법)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운전교육 무료지원(상이 1급~4급 본인만 해당)
  - 교육장소 : 전국 13개 중증장애인 운전지원센터(운전면허시험장내)
  - \*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기타지원" 참고

▶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재해부상군경**

- 예비군 편성 면제 : 의가사전역자는 예비군 편성 면제이나 만기전역자는 훈련보류 대상으로 관할 예비군 동대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 필요 (면제를 원할 경우는 병무청에 신청)
  - ※ 병무청 문의전화(동원관리과 ☎ 042-481-2791)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 민방위대에 제출

▶ **집에서 돌볼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수권 유족(자녀 제외)
  -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 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보훈복지사가 복지환경 실태조사 및 생활수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 주 1~2회(회당 2시간) 재가보훈실무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 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신고(전화)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승계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
-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사진 1매(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크기)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부상군경 및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사망시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 유족 사망시 다음 보상금 받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
  - 지급순위
    1. 재해부상군경 본인 사망시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2. 재해부상군경 유족 사망시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이 없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 주관자(장례주관 입증서류제출)
  - 지급금액

구분	지급액(천원)
◎ 재해부상군경	
-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1,704
-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1,444
- 상이등급 2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1,127
◎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다음 보상금 받은 유족이 없을 경우)	1,127

##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전화번호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02)3785-0815
서울남부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02)3019-2300
서울북부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02)944-9260
경기남부지방보훈청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평택, 오산, 의왕, 군포, 시흥, 화성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031)259-1801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김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032)588-4100
경기북부지방보훈청	의정부, 동두천, 구리,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양평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031)843-5748
경기동부지방보훈청	성남, 하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대경빌딩 3층(언남동) (031)289-2302
강원서부지방보훈청	춘천, 원주,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횡성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033)258-3609
강원동부지방보훈청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고성, 양양, 정선, 평창, 영월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06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042)280-1114
충남서부지방보훈청	보령,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서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041)630-3700
충남동부지방보훈청	세종특별자치시, 천안, 아산, 공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041)589-4900
충북남부지방보훈청	청주, 진천, 보은, 영동, 옥천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043)285-3213
충북북부지방보훈청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증평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043)841-8800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전화번호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상주, 김천, 구미, 경산,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청도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230-6010
경북북부지방보훈청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의성, 영양, 청송, 예천	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054)650-1400
경북남부지방보훈청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054)778-2600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051)469-8991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양산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052)228-6500
경남동부지방보훈청	김해, 창원, 밀양, 거제, 창녕, 의령, 함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055)981-5600
경남서부지방보훈청	진주, 사천, 통영, 남해, 하동,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산청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055)752-3881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강진, 장흥, 해남, 완도	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062)975-6500
전남동부지방보훈청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061)720-3200
전남서부지방보훈청	목포, 무안, 영광, 진도, 함평, 신안, 영암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273-0093
전북동부지방보훈청	전주,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063)239-4500
전북서부지방보훈청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5 (063)850-3702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사로 59, 3층 (064)710-8411

